

택배차 사고·고장시 대체 차량 대여 서비스

 추진부서 | 경기도 규제개혁과 ☎ 031-8008-4287

추진배경



- 영세 택배사업자는 운행하던 택배 차량이 사고가 나거나 고장이 날 경우 합리적인 대안이 없어 어려움을 겪음
 - 운행이 지연될 경우 계약 택배 물량의 변상 문제(식품 변질 등)가 발생하고, 차량 수리 기간이 장기화 될 경우 집하 작업 문제로 거래처 단절도 우려
 - 용달 차량과 기사를 함께 빌리는 소위 '용차'는 가능하나, 이 경우 차량 임차료 외 기사 인건비까지 추가 지불해야 하므로, 영세한 택배 사업자에 부담이 됨.
- 결국 영세 택배사업자는 사고 차량에 대한 정밀 점검이나 수리 기간이 긴 고장에 대한 근본적 수리 등을 기피 하게 될 유인이 커, 차량 안전 문제 발생
 - 부천 소재 기업은 해당 문제를 해결하고자 「택배차 사고·고장시 대체 차량 대여 서비스」 사업 모델을 구상하였으나, 관련 규제의 벽에 부딪혀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신청

[관련 규제]

-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
 -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 운송은 원칙적으로 금지
-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5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
 - 시설·장비 및 영업점 요건이 엄격(예: 5개 이상 시도에 30개소 이상 영업점 등)

개선내용



개선 전

영세 택배사업자는 운행하던 택배 차량이 사고가 나거나 고장이 날 경우 합리적인 대안이 부재

- 운행지연으로 인한 택배물량 변상, 수리기간 장기화 경우 거래처 단절 우려
- 대체 차량을 빌릴 경우 차량뿐 아니라 기사도 함께 고용하게 되어 비용부담 추가 발생



개선 후

택배차 사고·고장시 대체 차량 대여 서비스 사업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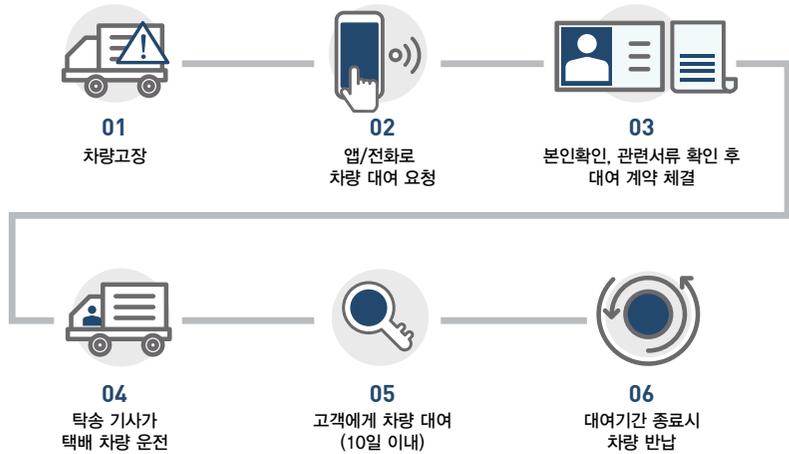
- 택배 차량이 사고 또는 고장으로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, 예비차량(동급의 자가용 화물차량)을 단기간 대여하는 서비스 실증 특례 부여
- 기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,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의해 제한받던 사항 일시적 규제 완화

추진과정



해당 사업 모델은 경기도 컨설팅을 거쳐 제27차 신산업·신기술 심의위원회에서 실증특례 지정되어, 서비스 개시

- 2021. 03. 11.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신청
- 2021. 04. 02.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기업 면담 실시
- 2023. 03. 11. ICT 규제실증특례 접수(과학기술정보통신부)
- 2023. 04. 19. 제27차 신산업·서비스 심의위원회 실증특례 지정
- (실증범위) 수도권 일대, 대여차량 30대
(1차년도 10대, 2차년도 30대까지)
- 2023. 11. 29. 실증특례서비스 개시 통보(2023. 12. 01 ~ 2025. 11. 30.)



개선효과



- 차량 사고 또는 고장시 배달 지연으로 인한 영세 택배사업자의 피해를 방지
- 택배 사업자가 배송 지연 우려로 차량의 수리 및 점검을 기피 하는 문제 해결